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30

발의연월일: 2021. 1. 4.

발 의 자:이 영・강민국・金炳旭

서일준 · 송언석 · 임이자

최춘식 • 추경호 • 한기호

허은아 · 홍문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추가로 수 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, 혈액형의 검사기관, 방법 등 의학적 사항 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있음.

그러나,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감한 생체정보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수록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조항은 사문화된 사항임.

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함(안 제24조).

법률 제 호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①	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, 사진,	②
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지문(指	
紋), 발행일, 주민등록기관을	
수록한다. <u>다만,</u> 혈액형에 대하	<u><단서 삭제></u>
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	
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.	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